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관서에서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사항(대통령령 제34996호, 2024. 11. 12., 일부개정, 2025. 1. 1.시행)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지원 대상자 사립대학 수업료 등의 지급방식이 국고보조에서 기타 보전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명 및 서식에서 국고보조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취업 및 교육관련 신청서 제출기관 및 증명서 발급기관의 현행화 등 현행 서식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호 중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대학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를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부터 별지 제21호서식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앞쪽 제출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호에 따라 수업료등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앞 쪽 서식 명칭을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

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같은 쪽 제출처란을 다
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호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8조제1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32호서식의 뒤쪽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유의사항 제3호 중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국가보
훈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행번호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관련사항	대상구분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보훈번호		등록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제출처 (학교명)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 방 보 훈 청 장
보 훈 지 청 장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직인

이 증명은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유효합니다.

※ 위 학생에게 휴학·퇴학·정학 등 취학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우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성별)	()
	주 소	(전화번호 :)		
관련사항	대상구분		국가유공자 와의 관계	의
	보훈번호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제 출 처 (학 교 명)			용 도	(입학금, 수업료) 면제용
이미 면제받은 수혜 내역		입학금([]받음, []안받음) 학기 수() 또는 학점()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 등의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 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년 월 일 지 방 보 훈 청 장 보 훈 지 청 장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직인				
이 증명은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유효합니다.				
※ 위 학생에게 휴학·퇴학·정학 등의 취학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 주소 / 전화 () - / 전송 () -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대학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학교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목적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면학정신 함양		
사업내용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대학 수업료 등 면제		
필요경비	필요경비 총액	청구 금액	자기자본의 부담액
송금계좌	예 금 주	은 행 명	계 좌 번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대학수업료등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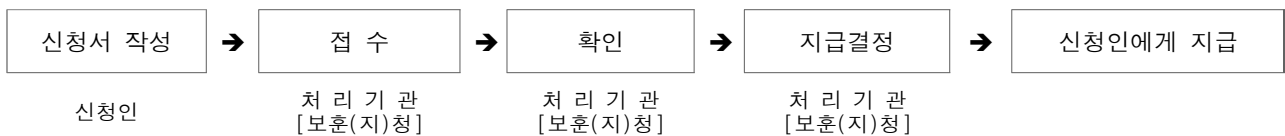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성적통지서 2부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확 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성적통지서

교육기관명 :

[illegibl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중 학점을 기준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 학습과목, 과정명(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 등)과 신청학점을 적습니다.

※ 학기 개시일 이전 휴학자는 복학 시점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인적사항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교육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와의 관계	학생 성명	학교명	학과 (학부)	학년	입학 연월일	직전 학기 성 적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보조액
금융기관		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호에 따라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1.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성적증명서(대학생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통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보훈(지)청]	→ 확인 처리기관 [보훈(지)청]	→ 지급결정 처리기관 [보훈(지)청]	→ 신청인에게 지급
확 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제 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	
	주소			전화 번호	
용도		채용시험 가점	가점비율	%	
제출처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 방 보 훈 청 장 보 훈 지 청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 유의사항 1.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위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취업사실을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2. 취업 사실을 통보하실 때는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제공되는 취업자 통보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업체(사립학교)명

수 신

(경유)

제 목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제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업체등(사립학교) 실태조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할 보훈(지)청		※ 일련번호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 업체 구분		
(1) 기본 사항	업종 구분	그룹명	계열사명	업체명 (학교명)						[]본사 []지사		
				대표자				설립일		년 월 일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본금		상장회사 여부		주 생산 또는 영업 품목				
(2) 직원 구성	고용형태별	㉠ 합계 (㉠~㉢)	산정인원					산정 제외 인원 (원천징수인원 중 ㉠~㉢ 외 인원)				
			㉡ 정규직	㉢ 무기계약직	㉣ 기간제(1년 이상 계약직)		1년 미만 계약직	기타 인원	기타인원 세부내역			
	직종별	㉤ 합계 (㉠~㉨)	㉠ 사무	㉡ 기술	㉢ 생산	㉣ 경비	㉤ 노무	㉥ 영업	㉦ 서비스	㉧ 기타	㉨고용 비율	㉩법정인원 (㉨×㉩)
											%	
(3) 취업지원 대상자 고용	㉪ 합계 (㉠~㉨)	㉠ 사무	㉡ 기술	㉢ 생산	㉣ 경비	㉤ 노무	㉥ 영업	㉦ 서비스	㉧ 기타	미고용 인원 (㉨-㉪)	고용률 (㉪÷㉨)	
(4) 군복무경력 호봉 인정		1. 병 2. 부사관 3. 준사관 4. 장교 5. 전부인정 0. 불인정					1. 100%인정 2. 30%이상 3. 30%미만 4. 불인정(사유:)					

(5) 장기복무 제대군인 방위산업체 고용 현황

구분		합계 (①~⑧)	① 사무	② 기술	③ 생산	④ 경비	⑤ 노무	⑥ 영업	⑦ 서비스	⑧ 기타
직종별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 현황										
방위 산업 분야	직종별 직원 구성	합계 (①~⑧)	① 사무	② 기술	③ 생산	④ 경비	⑤ 노무	⑥ 영업	⑦ 서비스	⑧ 기타
	특수직종별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 현황	합계 (①~⑭)	① 운전 및 운송	② 기계	③ 전기·전자	④ 정보통신	⑤ 화학	⑥ 섬유 및 의복	⑦ 탄약	⑧ 광학
			⑨ 항공기 제조 및 정비	⑩ 궤도차량 제조 및 정비	⑪ 총기류 제조 및 정비	⑫ 화포 제조 및 정비	⑬ 군용함정 제조 및 정비	⑭ 유도무기 제조 및 정비		

(6) 채용된 취업지원 대상자 명단

번호	보훈 번호	국가유공자 와의 관계	성명	생년 월일	채용 일자	취업 방법	직종	고용 형태	월임금 (천원)	비고
1										
2										
3										

※ 작성방법

1. ‘(5) 장기복무 제대군인 방위산업체 고용 현황’ 관련

- 가. 업체등이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 나. ‘직종별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 현황’ 란에는 방위산업체에 고용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수를 직종별로 적습니다.
- 다. ‘직종별 직원 구성’ 란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방위산업(「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을 말하며, 이하 라목에서 같습니다)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직종별로 적습니다.
- 라. ‘특수직종별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 현황’ 란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방위산업 분야에 고용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종별로 적습니다.

2. ‘(6) 채용된 취업지원 대상자 명단’ 관련

- 가. ‘월임금’ 은 1월부터 실태조사서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급여를 합산한 월평균 금액을 말합니다.
- 나. ‘고용형태’ 란에는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다. 채용된 취업지원 대상자 명단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적습니다.

※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 검토 및 처리결과(업체등이 적지 않습니다)

--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를 송부하오니 1개월 이내에 귀 업체등이 고용하여야 할 사람을 선정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고용 의무자	업체등명		추천자 중 고용 하여야 할 인원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추천 대상자 명단	보훈번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
	주소	(전화번호:)		
	학력		자격·면허	
	전공		고용 직종	
붙임 1. 추천대상자 명단 1부. 2.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서식) 1부.				
※ 유의사항 1.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고용할 사람을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업체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한 경우를 포함) 추천자 중에서 고용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는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선정 대상자가 없거나 그 인원이 고용 의무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추천대상자 명단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 80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서식)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중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되지 않은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18조(서식)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u>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u> : 별지 제20호서식	5. ----- <u>대학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u> ----- -----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8. 영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u>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u> : 별지 제22호의2서식	8. ----- <u>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u> ----- -----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11. 영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u>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u> : 별지 제26	11. ----- <u>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u>

호서식	-----
12. ~ 31. (생략)	12. ~ 31. (현행과 같음)